

【 주간이슈 】

일본 대지진과 보험제도의 국내 시사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이상우 선임연구위원

- 일본 동북부에서 3월 11일 발생한 규모 9.0 대지진의 피해가 일본 국내는 물론 태평양 연안국가에 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천문학적인 피해를 주고 있음.
 - 특히, 동북부지역은 천년에 1~2회의 대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안전지역이어서 지진보험 가입율도 일본전체에 비해 낮았고 중요시설들의 다수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우리나라는 1988년 내진설계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에 건설된 학교, 교량, 도로 등의 기반시설과 아파트, 고층건물 등이 많으며, 2000년대 들어서 지진의 빈도 및 심도가 높아지고 있어 지진리스크관리의 사각지역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
 - 개인 및 기업들의 지진보험가입율은 0.05%(화재보험가입자 기준)에 불과하여 지진리스크관리인식이 매우 낮은 상태이고, 정부도 풍수재 등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정책성보험을 도입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지진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번 동북부지역의 지진이 국내 동해안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한 경우를 감안하여 볼 때 이제 더 이상 지진리스크를 방치해서는 아니되며, 정부와 손해보험회사가 상호협력을 통한 지진리스크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을 비롯한 대만,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페인, 캘리포니아주 등 국가들의 경우 지진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정부가 운영사업자와 재보험담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손해보험회사는 보험판매, 보험료수납, 보험금 지급 및 재보험수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지진리스크는 시장원리에 의한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쓰나미를 담보하는 풍수해보험의 담보위험에 지진을 추가하여 자연재해보험제도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연대성을 강조하기 위한 요율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보험제도 도입시에 가입율 제고를 위해 일본과 같이 지진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있음.

1. 검토배경

□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에 일본 동북부지역 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강진으로 인한 10미터이상의 쓰나미(해일)가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4개 지역을 휩쓸어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이 예상되고 있음.

- 이러한 지진과 쓰나미는 개인들의 터전인 주택과 상가는 물론이고 각종 산업시설과 원자력발전소 등이 파괴되는 결과로 나타 나 천문학적인 손실이 예상됨.
- 이들 동북부 4개 지역의 전체보험가입금액(insured amount)은 3,000억 달러에 이르고 연안에서 3킬로미터 반경이내의 보험가입금액은 240억 달러로 알려져 있으며,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100억~25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음¹⁾.

□ 일본은 1964년에 발생한 니가타의 큰 지진으로 인해 지진을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할 리스크로 인식하는 계기가 됨에 동시에 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1966년에 『지진보험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 지진보험은 주택과 가재를 보험목적물로 담보하며 기타의 목적물은 사적으로 관리해야 함. 따라서 상업용 건물과 공장 등은 개별적으로 지진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보험보호를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이번에 발생한 동북부 4개 지역의 경우에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진 발생빈도가 1000년에 한번 이하라는 경험적 결과에 의해 지진보험가입율이 일본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지진보험을 통한 보호체계가 미흡함.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 매년 지진발생이 60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있으나 지진에 대한 사전 및 사후적인 리스크관리 대책은 미흡한 실정임.

- 정책당국도 내진설계기준 강화 등의 사전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사후적인 리스크관리측면에서는 빈번히 발생하는 홍수, 태풍 등을 우선순위로 하여 정책성보험을 도입한 반면 지진은 사적 영역으로 남겨둔 상태임.

□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일본 동북부 대지진의 피해사례와 보험제도를 반면교사(反面教師)삼아 국내에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대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지진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 매일경제, 『천문학적 보험금 우려 : 글로벌 보험사 울상』, 2011.3.14

2. 일본 대지진 피해 및 지진보험제도 역할

가. 동북부 대지진 피해

□ 일본 동북부지역의 대지진과 쓰나미 발생이후 여진이 발생하는 등 대지진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정확한 피해규모를 확정하기 어려우나 고베지진²⁾을 넘어서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지진은 진앙지역인 센다이 해안을 포함하는 미야기현과 인근의 이와테현, 후쿠시마현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진앙지역에서 200Km가 넘는 나가노와 동경지역 등 일본 국내는 물론 태평양에 인접한 외국에도 피해가 확산되었음.
- 이번 대지진은 많은 사상자와 주택 등 개인의 재산손실은 물론 기업의 주요 생산시설, 에너지시설, 건물 등에 큰 손실을 야기하였으며, 전국에 걸친 도로, 교량, 댐, 원자력 등 발전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에 피해를 줌.

□ 현재까지 대지진으로 인한 동북부지역의 예상 복구비는 1,800억달러(14조 6,341억엔³⁾)를 상회할 것으로 보임.

- 지진피해가 진행중인 가운데 예상 총피해액은 주택 등의 재산손실액 200억달러(1조 6,260억엔), 도로와 철도, 항만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 손실액이 400억달러(3조 2,520억엔)를 포함하여 최소 1천억달러⁴⁾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 지진규모나 이로 인한 쓰나미로 인한 손해액을 감안하면 보험회사가 지급해야할 예상 지급보험금은 고베지진보험금 783억엔을 훨씬 초과한 역사상 최대의 손실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제외할 경우 보험회사의 추정손해액은 최소 100억달러(8,130억엔)에서 최대 350억달러(2조 8,455억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⁵⁾.

2) 고베지진으로 인해 6,434명이 사망하고 10조엔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복구비용은 GDP의 2%에 해당하는 1150억달러이 있음.

3) 2011.3.15일 현재 환율 “1.23달러/100엔”으로 환산한 것임(이하 동일함)

4) <http://www.eqecat.com/>

5) 일본의 지진피해가 진행중인 상태이며, 해일로 인한 손실을 포함하지 않는 등 잠정적인 추정치임(<http://www.air-worldwide.com/>), 또한, 일본손해보험협회의 전망에 따르면, 최소 100억달러에서 150억달러의 손실액을 추정함.

<표 1> 일본 대규모 지진의 지급보험금 규모 추이

순위	연월일	지진명	규모	지급계약건수	지급보험금
-	1923	관동대지진	7.9	-	-
1	1995	고베대지진	7.3	65,427	783억엔
2	2001	게이요지진	6.7	24,448	169억엔
3	2005	후쿠오카서해안지진	7.0	21,970	169억엔
4	2004	니가타현지진	6.8	12,598	149억엔
5	2007	니가타현지진	6.8	7,826	82억엔
6	2005	후쿠오카지진	5.8	11,309	64억엔
7	2003	도카지오키지진	8.0	10,546	60억엔
8	2008	미야기현지진	7.2	8,000	54억엔
9	2009	이즈반도	6.5	8,244	45억엔
10	2008	이와데현지진	6.8	7,660	40억엔

주: 보험금 40억엔 미만은 제외

자료: 일본재보험주식회사

나. 일본 지진보험제도 역할

□ 일본의 지진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의 역할은 기업성물건과 가계성물건으로 구분하여 달리하고 있음.

- 기업성물건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정부가 나서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의한 자발적인 리스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손해보험회사는 지진담보 특약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 이에 비해 가계성 물건인 주택에 대해서는 국민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하기에는 한계에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본정부는 지진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와 보험회사가 상호협력을 통한 리스크관리를 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음.

□ 주택 등 가계성물건에 적용되는 일본지진보험제도는 1964년 6월 16일 니가타지역에서 규모 7.5의 강진의 발생으로 많은 인적, 물적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속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1966년 5월에 『지진보험에관한법률』과 『지진재보험특별회계법』이 공포·시행되었음.

- 일본 정부는 지진위험의 특성상 손해가 보험회사의 담보력을 크게 상회할 우려(수지상등의 원칙의 적용 곤란), 재해의 발생시기와 발생빈도의 예측이 곤란(대수의 법칙 적용 곤란), 특정지역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역선택의 문제 등으로 특

별법을 제정하게 되었음.

- 일본정부는 2008년부터 지진재해손실을 대비하는 국민들의 자조노력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진보험료의 소득공제(소득세(국세) 최고 5만엔, 주민세 최고 2.5만엔 공제)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지진보험은 법에서 강제가입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화재보험 가입시 지진담보특약을 부대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9년 기준 세대가입율은 23.2%에 불과한 실정임.

- 2010년 3월말 기준으로 화재보험에 지진담보특약을 첨부하여 가입한 비율은 45.0%에 이르며, 현재 지진보험의 가구가입률은 26.8%⁶⁾를 상회하는 등 고베지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지진보험은 주거용 건물과 가재도구를 대상으로 하고 지진·분화·쓰나미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화재·손괴·매몰·유실에 의한 손해를 보상함.

- 보험금액은 화재보험의 30%~50%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건물과 가재도구에 대해서는 각각 5천만엔, 1천만엔을 한도로 가입할 수 있음.

□ 보험요율은 지역별 4개 등급과 건물구조(목조, 비목조)에 따라 최저 0.5%, 최대 3.13%로 차등적용하며, 보험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고 2년에서 5년 계약도 가능하도록 운영함(2007년 10월 개정시 기준).

- 보험료 할인은 건축경과연수에 따른 할인(10%), 내진등급할인(최대 30%), 내진진단할인(10%) 등을 운영하고 할증제도는 없음.

□ 지진보험제도의 재보험처리체계⁷⁾는 보험회사와 정부가 상호 분담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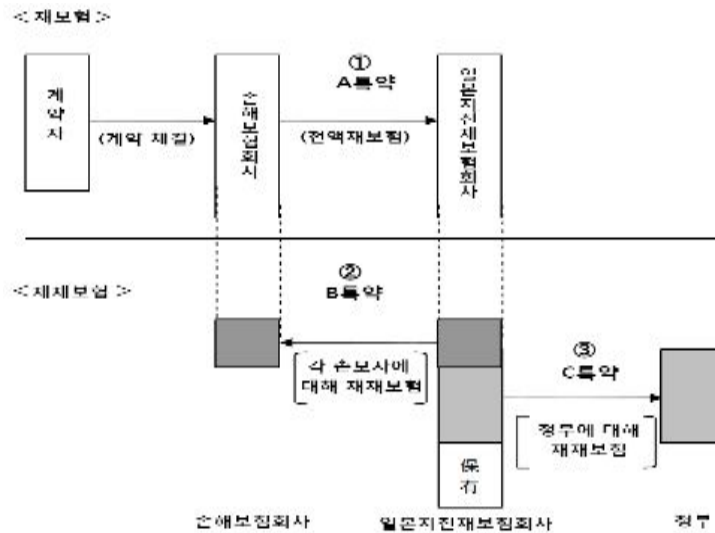
- 일본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지진보험의 판매, 보험료수납, 보험금지급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인수한 지진보험의 전액은 재보험계약(A)을 통해 지진재보험회사에 출재함.

6) 동경 수도권 지역 기준(동경+10개현, 일본지진보험회사)

7) 1회의 지진등에 의한 보험금의 민간보험회사와 정부의 책임분담 및 책임한도액은 지진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 지진재보험회사는 보험회사로부터 전가받은 지진리스크의 일부를 지진보험초과손해액재보험계약(C)에 의거 재보험을 하며, 정부에 출재하고 남은 리스크에 대해 민영보험회사와 개별적인 지진보험재보험특약(B)를 체결하여 전가하는 구조임.

<그림 1> 일본 지진보험의 보험회사와 정부의 역할분담 구조



자료: 일본지진재보험회사

- 2009년 현재 재보험처리체계를 1회 지진사고의 지급한도액 5조 5,000엔을 예로 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 손해보험회사는 재보험특약(B)에 의거 1,150엔까지는 전액부담하며, 1,150억엔 초과 1조 9,250억엔까지의 손해액에 대해서 50%, 1조 9,250억엔 초과 5조 5,000억엔까지에 대해서 5%만 부담하게 되어 총 부담액은 1조 1,987억5천만엔이 됨.
 - 정부는 초과손해액재보험계약(C)에 의거 총지급한도액 5조 5,000억엔에서 손해보험회사가 부담한 1조 1,987억5천만엔을 차감한 4조 3,012억 5천만엔을 부담함.

□ 이번 동북부지역의 지진보험가입율을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낮은 상태이며, 확보된 보험금액은 5조 220억엔(한화 70조 2,578억원⁸⁾)으로 일본 전체보험금액의 4.9%를 점유하고 있음.

- 후쿠시마현, 이와테현의 지진보험 가입률은 각각 12.6%, 14.1%로 전국평균 23.2%를 크게 하회한 반면, 지진발생지역인 미야기현의 경우 2008년 규모 7.2 지진발생으로 인하여 최근 가입률이 급격히 증가함.

8) 2011.3.16일 현재 환율 “1,399원/100엔”을 적용함.

<표 2> 일본 대지진 발생 지역의 지진보험 가입률(2010.3)

지역명	가구수(천가구)	가입건수(천건)	보험금액(백만엔)	가구가입률(%)
이와테현	500	61	515,739	12.35
미야기현	899	294	2,499,783	32.74
후쿠시마현	745	105	889,643	14.13
이바라키현	747	158	1,116,928	16.85
동경	6,241	1,888	15,570,771	30.26
전국	52,877	12,273	102,717,476	2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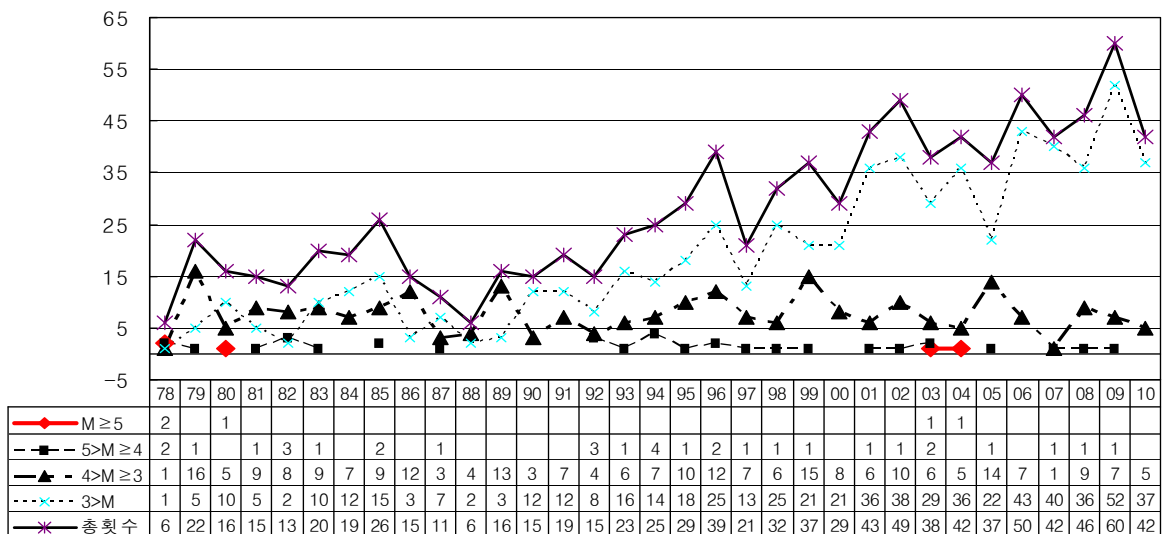
주: 일본재보험주식회사

3. 국내 지진보험제도의 문제점

□ 우리나라의 지진발생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어 모든 경제주체들이 지진 리스크를 매우 적게 평가하여 리스크관리의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음.

- 국내 지진발생 증가추이를 보면 80년대에는 매년 6건에서 최대 26건이 발생했으나 90년대에 들어서는 최소 15건 최대 39건으로 증가했고, 2000년대에는 최저 29건 최대 60건으로 크게 증가했음.
- 또한 규모(M) 4.0 이상 발생한 지진도 90년대에 들어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2> 국내 지진발생 추이



자료: 기상청 홈페이지

□ 우리나라의 지진리스크는 국내에서 발생한 것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주변국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쓰나미로 동해안지역의 피해를 두 번이나 경험⁹⁾한 바가 있으며, 이번 일본 동북부 지역의 강진이 동해안에서 발생하였다고 상정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동해안과 남해안 지역에 큰 쓰나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주체들은 보험가입을 통한 지진리스크관리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08년의 화재보험 가입통계에 의하면 주택의 경우 266건만 지진특약을 가입하고 있어 주택화재보험계약의 지진담보특약가입율은 0.22%에 불과한 실정임.

○ 또한 사무실이나 점포 등 상업용건물과 공장시설물의 경우에도 지진담보특약가입율은 각각 0.03%, 0.15%에 불과해 사실상 지진발생시 피해복구를 위한 리스크관리 대책이 거의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님.

<표 3> 화재보험계약 중 지진특약 가입현황(2008)

(단위: 건, 천원,%)

구분	화재보험 계약		지진담보특약 가입		지진담보 가입율	
	가입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주택	122,737	16,259,856	266	9,789	0.22	0.06
상업용	1,396,858	109,842,599	390	123,741	0.03	0.11
공장	51,458	144,716,963	78	45,785	0.15	0.03
계	1,571,053	270,819,418	734	179,315	0.05	0.07

자료: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연보』, 2009

□ 또한 정부도 지진재해에 대해서 경제주체들과 마찬가지로 사후적인 대책으로 집중우, 홍수, 태풍과 같은 다른 자연재해처럼 정책성보험제도(government insurance)를 도입하지 않고 시장의 관리영역으로 남겨놓고 있는 상태임.

○ 다만, 풍수해보험¹⁰⁾에서는 해일로 인한 주택의 침수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

9) 1983년 5월 26일 일본 혼슈 아키타현 서쪽 근해에서 발생한 진도 7.7의 지진과, 1993년 07월 12일 일본 홋카이도 오키시리섬 북서해역에서 진도 7.9의 지진을 경험한 바 있음.

록 되어 있지만 상당부분은 내륙지방의 저지대에 위치한 주택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연안지역의 주택이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지진쓰나미 대책으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4> 국내 자연재해관련 정책보험제도 운영현황

구 분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근거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풍수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소관부처	농림수산식품부	소방방재청	농림수산식품부
도입년도	2001년	2006년	2008년
보험의 목적	사과·배·포도·감·감귤·복숭아/밤·참다래·자두·감자·콩·양파·고추·수박·옥수수·고구마·마늘·매실 및 벼	비닐하우스, 주택	육상수조식 넙치 및 그 양식시설
담보위험	태풍·우박, 동상해, 호우/화재, 병충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태풍, 폭풍, 해일, 적조 어병(특약)
가입방식	임의가입	임의가입	임의가입
운영주체	농협중앙회(원보험사업) 보험회사(원보험, 재보험)	소방방재청 *보험회사(사업대행 및 재보험수재)	수협중앙회(원보험회사) 보험회사(원보험, 재보험)
정부지원	순보험료 50%, 사업비 전액	가입분의 일정비율로 순보험료 지원, 사업비 전액	순보험료 50%, 사업비 전액
보상방법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설정	피해규모별 정액보상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설정
위험분산	국가재보험제도	손실보전준비금, 국가보전	국가재보험제도

4. 국내 지진리스크관리의 시사점

가. 체계적인 지진리스크관리 대책 마련

□ 우리나라의 지진리스크는 발생빈도측면에서 증가하고 있고 지진발생시 손해입을 가능성 즉 심도측면에서는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어 보다 체계적인 사전, 사후적인 리스크관리대책을 검토해야 할 시점임.

○ 지진의 직접적인 피해는 내진설계 여부에 따라 피해규모가 달라지지만 국내의 내진설계는 88년에 6층 이상, 10만 ㎡ 이상 건축물에만 도입되었고, 2005년에는

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海溢)·대설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함.

3층 이상 1000㎡ 이상 건축물로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내진설계 의무적용 이전의 건축물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임.

- 또한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 쓰나미 피해에 대해서는 내진설계의 여부와 무관하며 해안가 저지대 건축물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 이에 비해 지진을 포함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정부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한 관련법제와 재보험 분산 체제를 구축하여 민영보험회사와 정부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음.

- 일본을 비롯한 대만,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은 지진, 분화로 인한 건물과 가재의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일정한도를 두어 정부가 운영주체가 된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보험회사는 보험판매와 보험료수납, 보험금 지급 등의 사업대행업무와 재보험 수재업무를 하고 있음.
- 노르웨이와 스페인, 프랑스 등은 지진, 분화, 폭풍, 홍수 등 대부분의 자연재해를 포괄하는 정부주관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민영보험영역에서 지진담보를 특약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가입율이 매우 낮은 상태이고, 풍수해보험, 양식재해보험에서 지진을 제외하고 쓰나미만을 담보하고 있어 지진리스크관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지진리스크관리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진은 시장원리에만 의존하여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uncontrollable risk)라는 것을 인식하여 화재보험가입시 정부 관장 자연재해보험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대만, 노르웨이, 스페인, 프랑스의 운영체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쓰나미를 담보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에 지진을 담보위험으로 추가해 자연재해보험으로 확대도입하는 방안과 의무가입 화재보험에 지진 등 재난리스크를 추가한 재난보험의 도입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5> 주요국의 지진보험제도 운영현황

구 분	일본	대만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페인	캘리포니아
보험 목적물	주택, 가재	주택	건조물, 농림, 주택, 가구 등 농원, 정원,	주택, 가재, 택지	-주거용, 상업용건물 및 수 용동산 -인적손해, 기업의 사업소 실	주택, 가재
담보위험	지진, 분화, 쓰나 미	지진의 직간 접손해	지반침하, 홍수, 폭풍우, 지진, 분화	지진, 분화, 지 열활동, 쓰나미, 폭풍, 홍수	지진, 홍수, 폭풍, 쓰나 미, 분화, 운석낙하, 등 사회적 혼란	지진(지진에 의한 화 재는 화재보험)
의무가입	의의가입	의무가입	의무가입	의무가입	강제가입(화재, 상해, 생 명보험)	의의가입
보험운영 주체	보험회사(사업 대행, 재보험)	보험회사 판 매대행	보험회사 판 매대행	보험회사판매대 행	보험회사 판매대행	보험회사사업대행
	일본지진재보험 회사: 재보험제 공	재 보험 제 공 (대만 주택 지 진보험기금)	자연재해풀	지진위원회(EC)	국영보험회사(CCS)	지진공사(CEA)
보험료	지역별 차등화 (0.50-3.13%)	단 일 요 율 (1.2158%)	단 일 요 율 (0.10%)	단일요율0.5%	주택, 콘도 0.08% 사무실 0.12%	지역별 차등화 (0.36-9.0%)
보험가입 한도액	건물 5000만엔 동산 1000만엔	120만위안	한도없음	주택 10만NZ\$ 가재 2만NZ\$ 택지 보험가액	한도없음	건물: 보험가액 가재: 10만달러 임시비용 15,000달러
보험금 제한	1회사고액 5.5 조엔초과시 삭 감지급	1 회 사 고 액 600억위안시 삭감지급	25억노르웨이 크로네	재조달가액 기준 실손보상	상한액 제한 없음	1회사고액이 96억달 러인 경우 삭감지급

자료: 損害保険料率算出機構, 『日本の地震保険』, pp.99-103, 2010.1.

나. 사회적 연대성 보험제도 운영

□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해 리스크는 개인들의 리스크관리능력보다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사회적 연대성(social solidarity)을 강조한 보험제도의 운영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연대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요율제도와 보험료세제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음.

- 지진보험제도를 도입한 국가중 일본과 캘리포니아주 등은 지역별 지진리스크등급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지만 노르웨이, 스페인, 대만, 뉴질랜드 등은 전국을 단일요율로 하여 리스크 풀링 기능과 보험료 상호부조를 통해 범국민적 리스크관리제도에 동참하고 있음.

- 일본이 낮은 가입율 제고를 위해 보험료세액공제를 도입한 것처럼, 지진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지진보험료 소득공제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KiRi